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6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강대식 · 진종오
고동진 · 이현승 · 윤한홍
김예지 · 김선교 · 추경호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·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벤처투자조합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

제41조제2항제2호).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제2호 중 “포함한다)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”를 “포함한다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기금의 지원대상 · 용도)	제41조(기금의 지원대상 · 용도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.	②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(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 · 운용 및 처 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를 포함한다) 및 「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(이하 “회사등”이라 한 다)에 대한 출자 · 투자나 제1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 대비용	2. ----- ----- ----- -----포함한다)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「여신전문 금융업법」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----- ----- ----- ---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